

매출액 대비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산출방식

※ 기준월: 고용유지조치 시행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예: 2024.5.8. 휴직 시작 시, 기준월은 2024.4월)

① (제1호)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기준월의 직전 6개월						기준월 (__년__월)	감소율
()월	()월	()월	()월	()월	()월		

② (제2호)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여부)

기준월의 직전 6개월						기준월 (__년__월)	감소율
3개월			3개월				
()월	()월	()월	()월	()월	()월		

* 2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③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 판단기준 중 제2호*

* 주된 업종의 전환·생산 방식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자동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고용 감소가 예상되고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직전 6개월						기준월 (__년__월)	감소율
()월	()월	()월	()월	()월	()월		

※ 위 산정방법 중 선택하여 작성 시 매출액 대비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
(예)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액 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위 매출액 대비표는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기재하였으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 또는 부정수급하려는 금액의 2배 또는 5배의 추가 징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준월의 매출액 확정 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므로 계획 신고 후 기준월의 확정된 매출액이 비교기준에서 감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부지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장에 귀속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

(인)